

1. 개정이유

「정부조직법」(‘24.2.13.)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소관 고시(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15개)의 조직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조직명칭 등 변경

조번호	행정규칙 명	개정 내용
제1조	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	○ 조직명칭 등 변경 - 문화재청→국가유산청 - 문화재청장→국가유산청장
제2조	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	
제3조	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	
제4조	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	
제5조	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	
제6조	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	
제7조	국가유산수리 경력,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	
제8조	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	
제9조	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	
제10조	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	
제11조	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	
제12조	국가유산수리기술자·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	
제13조	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	
제14조	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	
제15조	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예산에 기반영 되었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생략

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

고시 등 15개 문화재청고시 일괄개정안

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15개 문화재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제1조(「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」의 개정)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호 중 “문화재청장은”을 “국가유산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」의 개정)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호다목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4호가목 중 “문화재청에”를 “국가유산청에”로 한다.

제6호가목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」의 개정)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 1.5 기술지도단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문화재청·광역지자체”를 “국가유산청·광역지자체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1.1. 국가유산수리 목적 중 “문화재명”을 “국가유산명”으로 하고, 1.5. 기술지도단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별첨 1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」의 개정)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3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1.6 기술지도단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문화재청·광역지자체”를 “국가유산청·광역지자체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1.5 기술지도단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별첨 1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」의 개정)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4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3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1.6 기술지도단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문화재청·광역지자체”를 “국가유산청·광역지자체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1.5 기술지도단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별첨 1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」의 개정)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국가유산수리 경력,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」의 개정)
국가유산수리 경력,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호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」의 개정) 국가유산수리 설계
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문화재청”을 각각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」의 개정) 국가유
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」의
개정)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“문화재청”을 각각 “국가유
산청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」의 개

정)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호 중 “문화재청장은”을 “국가유산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국가유산수리기술자·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」의 개정) 국가유산수리기술자·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각각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별표1 제1호 중 “문화재청”을 각각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」의 개정)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전단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4호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」의 개정)
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”를 “국가유
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”을 “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」의 개
정)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각각 “국가유산
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각각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
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적용방법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다.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<u>문화재청장</u> 및 시·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,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·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4. 구분별 기본원칙</p> <p>가. 일반원칙</p> <p>○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보존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자료(사진, 도면 등)에 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고 <u>문화재청</u>에 보고한다.</p> <p>나. ~ 마. (생략)</p> <p>6. 재검토기한</p> <p>가. <u>문화재청장</u>은 「훈령·예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</p> <p>-----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4. 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----- <u>국가유산청</u>에 -----</p> <p>-----.</p> <p>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가.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</p>

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)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보고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<u>문화재청장</u>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0조(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2조(현장문서 인계·인수) ①</p> <p>· ② (생략)</p> <p>③ 발주자는 제2항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,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<u>문화재청장</u>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2조(현장문서 인계·인수) ①</p> <p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65조(규제의 재검토) <u>문화재청장</u>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</p>	<p>제65조(규제의 재검토)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

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)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<u>문화재청장</u>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 ②·③ (생략)</p>	<p>제20조(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2조(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·확인) ① ~ ③ (생략) ④ 발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<u>문화재청장</u>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2조(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·확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국가유산청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63조(현장문서 인계·인수) ①·② (생략) ③ 발주자는 제2항의 최종감리</p>	<p>제63조(현장문서 인계·인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</p>

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,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6조(규제의 재검토) 문화재청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국가유산청장 -----
-----.

제66조(규제의 재검토) 국가유산청장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인증제 운영기관) ① <u>문화재청장</u>은 효율적으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인증제 운영기관) ①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인증심의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<u>문화재청장</u>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인증심의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위촉 및 임기) ① <u>문화재청장</u>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·조사위원을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위촉 및 임기) ①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심의·조사위원의 해촉) <u>문화재청장</u>은 위촉된 심의·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심의·조사위원의 해촉)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

1. ~ 4. (생략)

제24조(기타사항) 문화유산교육
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
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
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
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기타사항) -----

----- 국가유산청장-----
--.

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공사시방서 작성) ① 공사시방서는 <u>문화재청</u> 제정 「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」 내용을 준칙으로 작성하되, 공사의 특수상황, 지역여건,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. 특기시방서는 「현판 제작 특기시방서 작성 지침」 과 같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사안에 작성토록 한다.</p> <p>② 「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」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<u>문화재청</u> 관련 제 법 규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, 토목공사표준시방서,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공사시방서 작성) ① ----- <u>국가유산청</u> 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국가유산청</u> -----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3. 연락처 : <u>문화재청</u> 수리기술 과 가. 주 소 : (우35208) 대전광 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 <u>화재청</u> 수리기술과 나.·다. (생 략)	3. ----- <u>국가유산청</u> ----- -- 가. ----- ----- <u>국</u> <u>가유산청</u> -----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신고자료의 확인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직권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.

1. 문화재청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

2. (생략)

제9조(경력인정 면접심사) ① ~ ③ (생략)

④ 경력인정 면접심사의 심사기준, 심사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.

제14조(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협의회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, 수탁기관의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이 경우, 위원장은 문화재청 수리

제8조(신고자료의 확인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국가유산청-----

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경력인정 면접심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국가유산청장-----

--.

제14조(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국가유산청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국가유산청 -----

기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
사무관으로 한다.

제15조(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
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위원회 구성은 심의의 객관
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5
인,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
이 경우, 수탁기관은 문화재청
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제
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
실시한다. 이 경우, 수탁기관은
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
야 한다.

제17조(재검토기한) 문화재청장은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
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
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
기준으로 매 3년마다(매 3년이
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
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
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
야 한다.

-----.

제15조(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
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----- 국가유산청
장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.

국가유산청장-----
-----.

제17조(재검토기한) 국가유산청장

-----.

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자본금확인서 발급 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 예치·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(이하 “발급요령”이라 한다)은 <u>문화재청장</u>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6조(자본금확인서 발급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)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<u>문화재청장</u>, 시·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3조(진단서류의 보존 등)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, <u>문화재청장</u>이나 시·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3조(진단서류의 보존 등) ① - ----- -----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폐업신고의 처리방법) ①</p>	<p>제29조(폐업신고의 처리방법) ①</p>

시·도지사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고, 그 사실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---- 국가유
산청장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</u></p>	<p><u>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<u>문화재청</u>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국가유산청</u> -----</p>
<p>제2조(위임사업) <u>문화재청</u>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위임사업) <u>국가유산청</u>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위임사무) <u>문화재청</u>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과 소관 이외의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3조(위임사무) <u>국가유산청</u> -----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**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실태조사 계획 수립)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<u>문화재청장</u>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기타 <u>문화재청장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실태조사 계획 수립) ① -- ----- --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실태조사 대상)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기타 <u>문화재청장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</p>	<p>제5조(실태조사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 <u>국가유산청장</u>----- -----</p>
<p>제6조(실태조사 방법)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·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</p>	<p>제6조(실태조사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실태조사 결과의 보고)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실태조사 결과의 공개)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2조(수급계획의 수립)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급관리재료) ① (생략)

--- 국가유산청장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실태조사 결과의 보고) ①

----- 국가유산청장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실태조사 결과의 공개) ①

국가유산청장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급계획의 수립) ① 국가유산청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유산청장-----

-----.

제13조(수급관리재료) ① (현행과

②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재검토기한) 문화재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같음)

② 국가유산청장-----

-----.

제14조(재검토기한) 국가유산청장

-----.